

선	기관의 장
람	



제 596 호

2004년 10월 11일 월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제741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제742호(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5

회								
람								

조 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4년 10월 11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41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매월 1일 근무일수당 30,000원의 당직비를 지급한다”를 “5만원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23조 제2항 중 “8월부터”를 “기간”으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신 4월미만의 경우에는 30일에 한하여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동조 제3항 중 “있다”를 “있으며, 임신 7월부터는 1일을 추가하여 얻을 수 있다”로 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상란의 “배우자(처)”를 “배우자”로 하고 일수란의 “1”을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매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공무원 당직 수당이 2004년부터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토록 변경됨에 따라
- 지난 2004. 1. 6일 당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 「제7조2」로 신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이를 규칙으로 위임 운영하여 당직근무의 효율성 제고 및 직원 사기진작 기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경우 보건의료 확대
 - 임신 기간동안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 출산휴가 보장
 - 출산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 확대

□ 주요내용

- 당직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함 (안 제7조의2)
-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경우
 - 만기출산 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도 출산휴가 보장(안 제23조 제2항)
 - 임신기간 7개월부터는 2일의 여성보건의료 확대(안 제23조 제3항)
- 경조사(출산 배우자)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안 별표3)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4년 10월 11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42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 한다”를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 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운행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로 한다”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너비 앞에 “건설교통부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를 삽입하고, “당해지역의 재난 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며, 동항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당해 지역의 재난구조 등을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 하고도 당해 지역의 재난구조 등이 가능한 경우

제12조의2 제1항 중 전용주차구역 다음에 “(이하 주거지전용 노상주차장이라 한다)”를 삽입하고, 주차구획별로 다음에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월 단위”를 삽입하고,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으며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할 경우 그 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주거지전용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①주거지전용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4급지 해당요금을 적용하되, 주차요금의 50%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가감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수하되, 금액은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징수한다.

1. 주차개시 시간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발견시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계속 주차한 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3.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4.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주차구획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제13조 제2항 중 후단에 “전일주차권 또는 월정기주차권을 발행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하는 때에 징수한다.”를 추가한다.

제20조 중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하고 “2퍼센트”을 “3퍼센트”으로 한다.

별표1, 별표9를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4조1항 관련)

구 분	1회 주차권		전일주차권	월정기주차권
	최초 30분까지	15분초과마다		
1 급 지	1,000원	500원	10,000원	100,000원
2 급 지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3 급 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4 급 지	300원	100원	3,000원	30,000원

<비 고>

1. 전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역실정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삭제>

3.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4. 노외주차장과 전일주차가 허용되는 노상주차장에 한하여 5시간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5. 1구획은 건설교통부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6. 주차요금의 특례

가. 구청장은 인근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기 요금을 기준으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증 및 할인요금은 각 기준요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할증 및 할인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나. 구청장은 월정기 주차권의 경우, 박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인근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와 월10대이상의 다수계약업소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급지를 구분하지 않고 1급지 전일주차권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당 정액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9]

장애인전용 주차장 설치기준 (제20조 관련)

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나. 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 주차장의 바닥 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 (2) 주차장 바닥 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 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라. 주차대수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10대미만은 제외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

□ 개정사유

-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행예정인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세부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고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에서 도로폭 제한 규정 삭제(안 제12조)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의 구체화 (안 제12조의2)
- 주거지전용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조항을 신설 (안 제12조의3)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개정 (안 제13조)
-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확보의무 강화 (안 제20조)
- 급지구분 및 주차요금 특례에 대한 권한 단일화 (안 별표1)
- 장애인전용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구체화 (안 별표 9)

